

보험 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1

- | | |
|--------------------|------------|
| 1. 쟁 점 | 5. 독 일 |
| 2. 시사점 | 가. 「보험계약법」 |
| 가. 보험 사기의 범위 | 나. 「형법」 |
| 나. 민사적 제재 | 6. 프랑스 |
| 다. 형사적 처벌 | 가. 「보험법」 |
| 3. 미 국 | 나. 「형법」 |
| 가. 모델보험사기법 | 7. 일 본 |
| 나. 뉴욕주 「보험법」과 「형법」 | 가. 「보험법」 |
| 4. 영 국 | 나. 「형법」 |
| 가. 「2015년 보험법」 | |
| 나. 「2006년 사기법」 | |



「입법현안 법률정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정보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dl.nanet.go.kr) 및 국회 법률도서관 홈페이지(law.na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46호

보험 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1

작성자 :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률정보실

목 차

1. 쟁 점	1
2. 시사점	4
가. 보험 사기의 범위	4
나. 민사적 제재	6
다. 형사적 처벌	10
3. 미 국	12
가. 모델보험사기법	12
나. 뉴욕주 「보험법」과 「형법」	33
4. 영 국	45
가. 「2015년 보험법」	45
나. 「2006년 사기법」	50
5. 독 일	54
가. 「보험계약법」	54
나. 「형법」	58
6. 프랑스	61
가. 「보험법」	61
나. 「형법」	64
7. 일 본	66
가. 「보험법」	66
나. 「형법」	71

1. 쟁점

보험 사기에 관해서는 굳이 통계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제 18대 국회에서부터 현행 제19대 국회까지 15차례가 넘게 시도되면서 입법적 한계라는 평가¹⁾가 있을 만큼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있었다.

보험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태생적 도박성이 한 원인이기도 하다. 보험도 도박과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경제적 득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 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서도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지만 첫 보험료만 내고서도 수십 또는 수백 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보험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보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증권시장에서도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경제적 득실이 달라지고 그 경제적 규모는 보험 사기의 금액을 초과하기도 한다. 최근 증권시장에서 각종 시세조작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을 다루는 정책은 인간의 욕구를 고려하여 가능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최대한의 예방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은 그러한 예방적 조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

1) 송윤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KiRi Weekly 제272호, 2014. 2. 24, 3-4면.

무²⁾, 위험변경 또는 보험사고 통지의무³⁾,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행위 금지⁴⁾ 등의 여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규정으로는 보험 사기를 방지할 수 없다고 여기고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시도가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⁵⁾일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보험 사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

2)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자동차가 침수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실이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도박적 성질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175-176면;

「상법」(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지의무와 유사한 것이지만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 또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통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상법」(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 사기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며, 보험계약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험업법」(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박대동의원 등 10인(의안번호 1906548, 2013. 8. 27.)

는 문제로 부각되었고,⁶⁾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감독과 처벌의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⁷⁾

보험 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감독기관의 강화, 형사적 처벌의 강화, 민사적 제재의 강화, 행정적 처벌의 강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감독기관의 조사나 그에 따른 행정처벌 등의 강화는 민사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의 강화가 뒷받침 되어야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처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6) 윤은식, “[2015국정감사]꺾일줄 모르는 보험사기·민원에 감사 초점”, 한국보험신문, 2015. 9. 14.

7) 박용주·고동욱·김수진, “<국감현장> 정무위, 서민금융·보험사기 관리 부실 질타”, 연합뉴스, 2015. 9. 15.

2. 시사점

가. 보험 사기의 범위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보험 사기’를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로 정할 것인가이다.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형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보험 사기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에 관련된 사기로 기술하는 것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구별이 곤란하며 별도로 규정을 두어야 할 실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모델보험사기법’(Model Insurance Fraud Act) 제2조에서는 거의 모든 유형을 망라하여 보험 사기를 규정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보험 사기를 포섭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모델법(Model Act)을 기초로 하여 실제로 제정된 뉴욕주 통합 「보험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State - Insurance) 제403조에서는 ‘보험 사기’의 범위를 뉴욕주 통합 「형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State - Penal)에 맡기고 있다. 뉴욕주 통합 「형법」 제176.05조는 보험 사기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관해서 앞서 언급한 ‘모델보험사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험자 등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하여 금전 등의 이익을 취하는 다양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 등과 이익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할 뿐이다.

반면 영국의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 제12조에서는 ‘보험 사기’의 구체적 유형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사기적 청구’(Fraudulent claim)라고만 하고 있다. 보험 사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포괄적 개념으로 열어두고 있는 형태이며, 판례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이 정해지게 된다. 유사하게 일본의 「보험법」(保險法)도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으로 나누어 각각 보험 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험 사기’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판례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이 정해지게 된다. 다만 일본의 「보험법」(保險法)은 보험금 청구에 관해서만 사기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보험 사기의 유형이 한정적으로 보인다.

조금 다른 형태로 독일의 「보험계약법」(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은 ‘보험 사기’의 구체적 유형보다는 보험 사기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보험 사기에 대한 구체적 유형은 판례에 따르게 된다. 더불어 보험 사기에 관한 별도의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의 「형법」(Strafgesetzbuch) 제265조에서도 ‘보험 사기’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아닌, 「형법」 제263조의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위, 즉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넘겨버린 경우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과 또 다른 형태로 프랑스의 「형법」(Code des pénal) 제313-1조는 포괄적 개념의 사기죄를 규정하여 보험 사기도 포섭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보험법」(Code des assurances) 제L113-8조는 ‘사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보험 사기보다도 넓은 범위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보험계약

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사기죄⁸⁾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를 포괄할 수 있으며 우리 「보험업법」 제102조의2⁹⁾에서도 단순히 ‘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미국 뉴욕주의 「형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보험 사기’를 별도로 정의하기 보다는 판례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법」 보험편이나 「형법」상 별도의 보험 사기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민사적 제재

우리 「상법」 보험편은 보험 사기에 관한 별도의 민사적 제재나 효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의 ‘모델보험사기법’(Model Insurance Fraud Act)도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담보대출계약 등을 무효로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모델보험사기법 제 5조). 특이한 점은 주의 법무부장관, 검사 등이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소

8) 「형법」(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 「보험업법」(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모델보험사기법 제7조 제d항). 이와는 좀 다르게 뉴욕주 통합 「보험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State - Insurance)은 보험 사기를 한 자에 대하여 각 위반 행위 마다 배상청구는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5,000달러 이하의 민사적 제재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뉴욕주 통합 「보험법」 제403조).

영국의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 제1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 보험자는 사기적 청구에 관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사기적 보험 행위 시부터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보험 사기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자는 기존에 받았던 보험료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사기적 보험 행위 이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모든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적 보험 행위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본래의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독일의 「보험계약법」(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은 우리나라의 「상법」 보험편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다(「보험계약법」 제22조). 보험계약자가 사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되거나 감경된다(「보험계약법」 제81조). 만일 사기로 체결된 계약이 실제 보험 대상물의 가치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초과보험’(Überversicherung)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상황을 안 시점까지 받은 보험료를 반환

할 필요가 없다(「보험계약법」 제74조). 또한 보험계약자가 사기의 의도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보험 대상물의 가치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중복보험’(Mehrfachversicherung)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보험계약법」 제78조).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무효로 처리되며, 이 역시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보험계약법」 제80조).

일본의 「보험법」(保險法)은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사기를 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보험법」 제30조).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험 사기 행위가 있는 후부터 보험계약의 해제가 있기 전까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보험법」 제31조). 또한 보험자는 보험 사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료 반환의 의무가 없다(「보험법」 제32조). 생명보험(「보험법」 제57조, 제59조, 제64조)과 상해질병정액보험(「보험법」 제86조, 제88조, 제93조)도 같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

프랑스의 「보험법」(Code des assurances)은 보험계약자가 연령의 착오를 제외하고 보험자에게 고의로 사실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는 비록 그로 인하여 보험 사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며, 이미 지급한 보험료도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된다(「보험법」 제L113-8조). 프랑

스의 「보험법」에서도 독일과 같이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은 무효의 대상이다(「보험법」 제L121-3조, 제L121-4조).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 「보험법」의 입장과 다소 상반되는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제14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제14조는 보험계약자가 사기의 고의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이나 부실 고지 등을 한 경우에 보험자가 최대선의원칙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최대선의의무가 적용되어 고지의무 위반, 고의 없는 부실 고지 등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변화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가 없어지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질의 사항에 답하기만 하면 되며, 고의 없는 부실 고지의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보험금만 감액된다.¹⁰⁾

이와 같은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보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되거나 청구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보험료 반환 등을 제한하는 내용과 사기의 고의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이나 부실 고지 등을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은 향후 입법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임수민, “최대선의원칙과 보험계약당사자 보호”,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4호, 2013. 10, 18-23면.

다. 형사적 처벌

미국의 ‘모델보험사기법’(Model Insurance Fraud Act)은 형사적 처벌의 경우에 보험 사기의 범위가 넓은 만큼 모든 보험 사기 범죄를 중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하를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모델보험사기법 제4조). 뉴욕주 통합 「형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State - Penal)의 경우에는 보험 사기의 경범죄와 중죄를 가르는 기준이 1,000달러이다(뉴욕주 통합 「형법」 제176.15조). 1,000달러를 넘으면 보험 사기의 중죄가 성립되며, 보험 사기의 중죄는 3,000달러, 50,000달러, 1,000,000달러를 기준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뉴욕주 통합 「형법」 제176.20조, 제176.25조, 제176.30조). 또한 제176.35조와 제176.70조에서는 5년 이내의 재범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별도로 보험 사기를 규정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형법」(Strafgesetzbuch) 제263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형법」의 사기죄¹¹⁾와 같은 형태로 되어있다. 즉 포괄적으로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도 포함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별도로 「형법」 제265조에서 보험에 가입하되 물건의 훼손 등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독일 「형법」 제265조의 보험남용죄는 보험 사기가 「형법」 제263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처벌 규정이다. 즉 독일 「형법」 제263조의 사기죄에 대하여 보충적인 규

11) (주8) 참조

정이다.

반면에 영국의 「2006년 사기법」에서는 사기의 유형을 부정한 표시, 정보의 미공개, 직위 남용으로 크게 구분하고, 사기로 인한 이득과 손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거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2006년 사기법」 제2조, 제5조).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별도로 보험 사기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형법」(Code pénal) 제 313-1조와 일본의 「형법」 제246조도 영국과 유사하며,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별도로 보험 사기에 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이 포괄적인 형태의 사기죄를 규정한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보험 사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 미국

가. 모델보험사기법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하여 1993년 1월 27일에 ‘1994년 보험사기방지법안’(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 of 1994)이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제정되지 못했다.¹²⁾ 현재 연방법 차원의 보험 사기에 대한 규정은 미국연방법전 제18장 제1033조(18 U.S.C. §1033)¹³⁾에서 주(州)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업자에 관계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며, 일반적 보험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복수의 주에 걸쳐서 발생한 보험업자의 보험 범죄가 아닌 보험 사기에 관해서는 각 주의 법률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기구인 보험사기방지협회(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 CAIF)¹⁴⁾가 마련한 ‘모델보험사기법’(Model Insurance Fraud Act)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록 모델법¹⁵⁾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여러 주에서 그 내용은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반영

12) 미국 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1993년 1월 27일에 발의되어 1994년 3월 25일에 하원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https://www.congress.gov/bill/103rd-congress/house-bill/665>, 2015. 10. 26. 방문).

13) 18 USC 1033: Crimes by or affecting persons engaged in the business of insurance whose activities affect interstate commerce.

14) <http://www.insurancefraud.org/index.htm#VkAqyEbou70>(2015. 10. 30. 방문)

15) ‘모델법(Model Act)’은 연방법이나 각 주의 주법으로 반영되길 희망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법률안으로서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다만 상당수의 모델법들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되고 있다.¹⁶⁾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각 주의 법률을 모두 살펴보는 것보다 모델법을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법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모델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모델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보험 사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모델법 답게 상당히 넓은 범위를 보험 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험 사기의 고의를 가진 경우는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보험 사기를 실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보험 사기를 실현시킨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보험 사기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관해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자 등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하여 금전 등의 이익을 취하는 다양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보험 사기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 선동, 공모 등을 한 것도 모두 포함시키고 관련 행위에 대한 미수도 포함한다. 더불어 보험 계약을 근거로 하는 보험료담보대출계약(이른바 ‘약관대출’)도 보험 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자의 합병 등에 관련된 자금을 남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에도 보험 사기에 포함된다(모델보험사기법 제2조).

보험 사기를 한 자에 대한 처벌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적 처벌, 민사적 배상, 행정적 제재를 모두 포괄한다. 형사적 처벌의 경우에는 보험 사기의 범위가 넓은 만큼 모든 보험 사기 범죄를 중죄로 처

16) 각 주(州)의 수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윤아, “미국의 보험 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 방안”(‘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 현안과 과제’ 세미나 자료, 2012. 5.), 6-7면 참조.

별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하를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모델보험사기법 제4조). 경범죄와 중죄를 나누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각 주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의 뉴욕주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적 배상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담보대출계약 등을 무효로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¹⁷⁾ 보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물론이며 그에 따른 조사와 집행 비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법원은 형사적 처벌에 따른 벌금과 별도로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즉 형사적 처벌에 따른 벌금이 민사적 배상금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모델보험사기법 제5조). 특이한 점은 주의 법무부장관, 검사 등이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모델보험사기법 제7조 제d항). 더불어 피해자 외에 제3자도 보험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모델보험사기법 제7조).

행정적 제재는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사자가 우선 그 대상이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관련 면허 당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원 또는 검사는 통지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도 전문직종사자의 유죄판결을 관련 면허 당국에 통지할 수 있다. 만일 전문직종사자가 보험 사기 범죄 중에서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다

17) 민사소송에서도 사기로 체결된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다.

음으로 보험업을 하는 자가 보험 사기로 중죄의 판결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보험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행정 처분은 모두 공공기록으로 관리된다(모델보험사기법 제6조).

원 문	번 역 문
<p>Model Insurance Fraud Act¹⁸⁾ (Adopted March 1995; amended September 1998)</p> <p>(…)</p> <p>Section 2. Fraudulent Insurance Act</p> <p>Any Person who, knowingly and with intent to defraud, and for the purpose of depriving another of property or for pecuniary gain, commits, participates in or aids, abets, or conspires to commit or solicits another Person to commit, or permits its employees or its agents to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has committed a Fraudulent Insurance Act:</p> <p>(a) Presents, causes to be presented, or prepares with knowledge or belief that it will be presented, by or on behalf</p>	<p>모델보험사기법 (1995년 3월 채택; 1998년 9월 수정)</p> <p>(…)</p> <p>제2조 사기적 보험 행위</p> <p>누구든지, 사기의 고의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에 참여하거나 방조, 선동, 또는 실행의 공모 또는 다른 사람을 교사하거나,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에게 허용한 자는 사기적 보험 행위를 행한 것이다.</p> <p>(a)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또는 그 이름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담보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자, 보험전문가, 보험료담보대</p>

18) <http://www.insurancefraud.org/model-fraud-act.htm#VkAqckbou70>(2015. 10. 30. 방문)

원 문	번 역 문
<p>of an insured, claimant or applicant to an Insurer, Insurance Professional or Premium Finance Company in connection with an Insurance Transaction or Premium Finance Transaction, any information which contains false representations as to any material fact, or which Withholds or Conceals a material fact concerning any of the following:</p> <p>(1) The application for, rating of, or renewal of, any Insurance Policy;</p> <p>(2) A claim for payment or benefit pursuant to any Insurance Policy;</p> <p>(3) Pay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y Insurance Policy;</p> <p>(4) The application used in any Premium Finance Transaction;</p> <p>(b) Presents, causes to be presented, or prepares with knowledge or belief that it will be presented, to or by an Insurer, Insurance Professional or a Premium Finance Company in</p>	<p>출회사에게 청구한 자 또는 신청한 자가 사실 자료에 관해서 잘못 표현하는 정보 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사실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숨기는 정보를 제출, 제출하도록 원인제공, 또는 제출될 것을 알았거나 믿고서 준비하도록 하는 행위:</p> <p>(1) 보험증권에 대한 신청, 평가, 또는 갱신;</p> <p>(2) 보험증권에 따른 지급 또는 혜택 청구;</p> <p>(3) 보험증권의 조항에 의한 지급;</p> <p>(4) 보험료담보대출계약의 이용 신청;</p> <p>(b)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담보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자, 보험전문가, 보험료담보대출회사가 또는 그에 의해서 사실 자료에 관해서 잘못 표현하는 정보 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사실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p>

원 문	번 역 문
<p>connection with an Insurance Transaction or Premium Finance Transaction, any information which contains false representations as to any material fact, or which Withholds or Conceals a material fact, concerning any of the following:</p> <p>(1) The solicitation for sale of any Insurance Policy or purported Insurance Policy;</p> <p>(2)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authority;</p> <p>(3) The financial condition of any Insurer;</p> <p>(4) The acquisition, formation, merger, affiliation or dissolution of any Insurer;</p> <p>(c) Solicits or accepts new or renewal insurance risks by or for an insolvent Insurer.</p> <p>(d) Removes the assets or records of assets, transactions and affairs or such material part thereof, from the home office or other place of business of the</p>	<p>보유하거나 숨기는 정보를 제출, 제출하도록 원인제공, 또는 제출될 것을 알았거나 믿고서 준비하도록 하는 행위:</p> <p>(1)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권이라 여기는 것의 매도에 관한 청약;</p> <p>(2) 감독당국의 인증에 관한 신청;</p> <p>(3) 보험자의 금융 조건;</p> <p>(4) 보험자의 인수, 생성, 합병, 연대 또는 해산;</p> <p>(c) 파산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신규 또는 갱신 보험위험의 청약 또는 수용하는 행위;</p> <p>(d) 본사 또는 보험자의 다른 사무실, 또는 보험자의 보관 장소에서 자산 또는 자산의 기록, 계약과 업무 또는 그것의 일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또는 같은 사항을 보험 부서에</p>

원 문	번 역 문
<p>Insurer, or from the place of safekeeping of the Insurer, or destroys or sequesters the same from the Department of Insurance.</p> <p>(e) Diverts, misappropriates, converts or embezzles funds of an Insurer, an insured, claimant or applicant for insurance in connection with:</p> <p>(1) An Insurance Transaction;</p> <p>(2) The conduct of business activities by an Insurer or Insurance Professional;</p> <p>(3) The acquisition, formation, merger, affiliation or dissolution of any Insurer.</p> <p>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commit, or to attempt to commit, or aid, assist, abet or solicit another to commit, or to conspire to commit a Fraudulent Insurance Act.</p> <p>Section 3. Unlawful Insurance Act</p> <p>Any Person who commits, participates in, or aids, abets, or conspires to commit,</p>	<p>서 파괴하거나 은폐하는 행위.</p> <p>(e) (아래의 사항)과 관련된 보험행위에 관하여 보험자, 피보험자, 청구인 또는 신청인의 기금을 전용, 남용, 전환 또는 횡령하는 행위:</p> <p>(1) 보험계약;</p> <p>(2) 보험자 또는 보험전문가의 영업;</p> <p>(3) 보험자의 인수, 생성, 합병, 연대 또는 해산.</p> <p>누구든지 사기적 보험 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수, 방조, 선동, 교사, 음모한 자는 위법하다.</p> <p>제3조 위법한 보험 행위</p> <p>누구든지, 신뢰를 유발할 의도를 가지고, 아래의 행위에 참여하거나 방조, 선동, 또는</p>

원 문	번 역 문
<p>or solicits another Person to commit, or permits its employees or its agents to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with an intent to induce reliance, has committed an Unlawful Insurance Act:</p> <p>(a) Presents, causes to be presented, or prepares with knowledge or belief that it will be presented, by or on behalf of an insured, claimant or applicant to an Insurer, Insurance Professional or a Premium Finance Company in connection with an Insurance Transaction or Premium Finance Transaction, any information which the Person knows to contain false representations, or representations the falsity of which the Person has Recklessly disregarded, as to any material fact, or which Withholds or Conceals a material fact, concerning any of the following:</p> <p>(1) The application for, rating of, or renewal of, any Insurance Policy;</p> <p>(2) A claim for payment or benefit</p>	<p>실행의 공모 또는 다른 사람을 교사하거나,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에게 허용한 자는 위법한 보험 행위를 행한 것이다.</p> <p>(a) 아래의 사실 자료에 대해 잘못 표현된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과실로 그 잘못을 무시하고 표현된 것을 알고 있다는 정보 또는 그 사실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숨기는 정보를 피보험자, 보험자에 청구 또는 신청하는 자, 보험료담보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전문가 또는 보험료담보대출회사가 또는 그에 의해서 제출, 제출하도록 원인제공, 또는 제출될 것을 알았거나 믿고서 준비하도록 하는 행위:</p> <p>(1) 보험증권에 대한 신청, 평가, 또는 갱신;</p> <p>(2) 보험증권에 따른 지급 또는 혜택 청구;</p>

원 문	번 역 문
<p>pursuant to any Insurance Policy;</p> <p>(3) Pay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y Insurance Policy;</p> <p>(4) The application for the financing of any insurance Premium;</p> <p>(b) Presents, causes to be presented, or prepares with knowledge or belief that it will be presented, to or by an Insurer, Insurance Professional or a Premium Finance Company in connection with an Insurance Transaction or Premium Finance Transaction, any information which the Person knows to contain false representations, or representations the falsity of which the Person has Recklessly disregarded, as to any material fact, or which Withholds or Conceals a material fact, concerning any of the following:</p> <p>(1) The solicitation for sale of any Insurance Policy or purported Insurance Policy;</p>	<p>(3) 보험증권의 조항에 의한 지급;</p> <p>(4) 보험료담보대출계약의 이용 신청;</p> <p>(b) 아래의 사실 자료에 대해 잘못 표현된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과실로 그 잘못을 모르고서 표현된 것을 알고 있다는 정보 또는 그 사실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숨기는 정보를 보험자, 보험료담보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전문가 또는 보험료담보대출회사가 또는 그에 의해서 제출, 제출하도록 원인제공, 또는 제출될 것을 알았거나 믿고서 준비하도록 하는 행위:</p> <p>(1)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권이라 여기는 것의 매도에 관한 청약;</p>

원 문	번 역 문
<p>(2)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authority;</p> <p>(3) The financial condition of any Insurer;</p> <p>(4) The acquisition, formation, merger, affiliation or dissolution of any Insurer;</p> <p>(c) Solicits or accepts new or renewal insurance risks by or for an Insurer which the Person knows was insolvent or the insolvency of which the Person Recklessly disregards.</p> <p>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commit, or to attempt to commit, or aid, assist, abet or solicit another to commit, or to conspire to commit an Unlawful Insurance Act.</p> <p>Section 4. Criminal Penalties</p> <p>A Person who violates Section 2 of this Act is guilty of:</p> <p>(a) A Class A misdemeanor if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p>	<p>(2) 감독당국의 인증에 관한 신청;</p> <p>(3) 보험자의 금융 조건;</p> <p>(4) 보험자의 인수, 생성, 합병, 연대 또는 해산;</p> <p>(c) 파산했다고 알고 있거나 과실로 파산한 것을 몰랐던 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신규 또는 갱신 보험위험의 청탁 또는 수용하는 행위.</p> <p>누구든지 위법한 보험 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수, 방조, 선동, 교사, 음모한 자는 위법하다.</p> <p>제4조 형사 처벌</p> <p>누구든지 이 법의 제2조를 위반하면 (다음의) 유죄가 된다:</p> <p>(a) A종 A경범죄 만일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 또는 (ii)</p>

원 문	번 역 문
<p>obtained, or attempted to 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 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less than ____;</p> <p>(b) A Class B misdemeanor if:</p> <p>(1)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 obtained, or attempted to 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 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____ or more but less than ____; or</p> <p>(2)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 obtained, or attempted to 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 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less than ____, and the defendant has been previously convicted of any class or</p>	<p>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보다 작은 경우;</p> <p>(b) A종 B경범죄 만일:</p> <p>(1)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가, 또는 (ii)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이상 이지만 ____보다 작거나;</p> <p>(2)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가, 또는 (ii)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보다 더 작고; 피고가 이전에 보험 사기의 종류 또는 등급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p>

원 문	번 역 문
<p>degree of insurance fraud in any jurisdiction;</p> <p>(c) A Class C misdemeanor if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 obtained, or attempted to 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 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____ or more but less than ____;</p> <p>(d) A felony in the third degree if:</p> <p>(1)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 obtained, or attempted to 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 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____ or more but less than ____; or</p> <p>(2)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 obtained, or attempted to</p>	<p>(c) A종 C경범죄 만일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가, 또는 (ii)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이상 이지만 ____보다 작은 경우;</p> <p>(d) A중죄 3등급 만일:</p> <p>(1)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가, 또는 (ii)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이상 이지만 ____보다 작은 경우; 또는</p> <p>(2)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가, 또는 (ii)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p>

원 문	번 역 문
<p>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 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less than _____, and the defendant has been previously convicted two or more times of any class or degree of insurance fraud in any jurisdiction;</p> <p>(e) A felony in the second degree if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 obtained, or attempted to 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 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_____ or more but less than _____;</p> <p>(f) A felony in the first degree if:</p> <p>(1)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 obtained, or attempted to 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p>	<p>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보다 더 작고; 피고가 이전에 보험 사기의 종류 또는 등급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p> <p>(e) A중죄 2등급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가, 또는 (ii)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이상 이지만 ____보다 작은 경우;</p> <p>(f) A중죄 1등급 만일: (1)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가, 또는 (ii)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이상 이지만</p>

원 문	번 역 문
<p>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_____ or more but less than _____; or</p> <p>(2)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 obtained, or attempted to 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 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less than _____ and the defendant has been previously convicted two or more times of any degree of felony insurance fraud in any jurisdiction; or</p> <p>(3) the greater of (i) the value of property, services or other benefit he wrongfully obtained, or attempted to obtain, or (ii) the segregate or aggregate economic loss suffered by any Person or Persons as a result of his violation of Section 2, is less than _____ and his violation of Section 2 of this Act placed any Person at risk</p>	<p>____보다 작은 경우; 또는</p> <p>(2)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가, 또는 (ii)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보다 더 작고, 피고가 이전에 보험 사기의 중 또는 등급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p> <p>(3) 그가 (i)위법하게 얻거나 얻으려 했던 재산, 서비스 또는 혜택의 가치가, 또는 (ii)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입힌 경제적 손실의 부분이나 총합 중에 더 큰 것이, ____보다 작고 제2조의 위반의 결과로 어떤 사람을 사망의 위협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p>

원 문	번 역 문
<p>of death or serious bodily injury.</p> <p>Section 5. Restitution</p> <p>A Person convicted of a violation of Section 2 of this Act shall be ordered to make monetary restitution for any financial loss or damages sustained by any other Person as a result of the violation. Financial loss or damage shall include, bu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loss of earnings, out-of-pocket and other expenses, paid deductible amounts under an Insurance Policy, Insurer claim payments, cost reasonably attributed to investigations and recovery efforts by owners, Insurers, Insurance Professionals, law enforcement and other public authorities, and cost of prosecution.</p> <p>When restitution is ordered, the court shall determine its extent and methods. Restitution may be imposed in addition to a fine and, if ordered, any other penalty, but not in lieu thereof. The court</p>	<p>제5조 배상</p> <p>이 법 제2조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금전적 손실이나 손해에 관하여 배상 명령에 처한다. 금전적 손실이나 손해는,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 손실, 지출 비용, 보험증권에 의해 공제될 수 있는 금액, 보험자가 청구한 금액, 소유자, 보험자, 보험전문가, 사법공무원, 공무원의 조사와 반환 노력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그리고 집행 비용을 포함한다.</p> <p>배상을 명령할 때, 법원은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배상은 벌금에 병과하여 부과되고, 만일 다른 형벌에 처한다면, 그 형벌을 대신할 수 없다. 법원은 배상을 명령할 때 일시불 또는 분할불 중에서 결정해야하고,</p>

원 문	번 역 문
<p>shall determine whether restitution, if ordered, shall be paid in a single payment or installments and shall fix a period of time, not in excess of _____, within which payment of restitution is to be made in full.</p> <p>Section 6. Administrative Penalties</p> <p>(1) (A) Any Practitioner determined by the Court to have violated Section 2 shall be deemed to have committed an act involving moral turpitude that is inimical to the public well being. The court or prosecutor shall notify the appropriate licensing authority in this state of the judgment for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including revocation of any such professional license(s), and may notify appropriate licensing authorities in any other jurisdictions where the Practitioner is licensed. Any victim may notify the appropriate licensing authorities in this State and any other</p>	<p>배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____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야 한다.</p> <p>제6조 행정벌</p> <p>(1) (A) 법원으로부터 제2조 위반으로 결정된 전문직종사자는 도덕적으로 비열한 행위를 포함하여 공익에 적대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법원 또는 검사는 그 전문직 면허의 취소를 포함하여 적절한 징계에 관하여 그 주(州)의 적절한 면허 관리 당국에 그 유죄 판결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전문직종사가 면허를 받은 다른 지역의 적절한 면허 관리 당국에 통지할 수 있다. 피해자는 누구나 그 주(州)와 그 전문직종사자가 면허를 받은 다른 지역의 적절한 면허 관리 당국에 그 유죄판결을 통지할 수 있다.</p>

원 문	번 역 문
<p>jurisdiction where the Practitioner is licensed, of the conviction.</p> <p>(B) Upon notification of a conviction of the crimes enumerated in Section 2 of this Act or a substantially similar crime under the laws of another state or the United States, this State's appropriate licensing authority shall hold an administrative hearing, or take other appropriate administrative action authorized by state law, to consider the i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s provided by law against the Practitioner. Where the Practitioner has been convicted of a felony violation of Section 2 of this Act or a substantially similar crime under the laws of another state or of the United States, this state's appropriate licensing authority shall hold an administrative hearing, or take other appropriate administrative action authorized by state law, and shall summarily and permanently</p>	<p>(B) 이 법 제2조에서 열거한 범죄, 또는 미국 또는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죄의 유죄판결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이 주의 적정한 면허 관리 당국은 전문직종사자에게 법에 따른 행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공청회 개최, 또는 이 주법의 권한에 따른 적정한 행정 조치를 한다. 만일 전문직종사자가 이 법 제2조의 중죄, 또는 미국 또는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주의 적정한 면허 관리 당국은 공청회 개최, 또는 이 주법의 권한에 따른 적정한 행정 조치, 그리고 약식으로 영구적 면허 취소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주(州)] 최고 법원의 이름으로 그러한 중죄에 유죄판결을 받은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입법을 제언한다.</p>

원 문	번 역 문
<p>revoke the license. It is hereby recommended by the legislature that the [name of the highest court in the state] shall summarily and permanently disbar any attorney found guilty of such felony.</p> <p>(C) All such referrals to the appropriate licensing or other agencies, and all dispositive actions thereof, shall be a matter of public record.</p> <p>(2) (A) A Person convicted of a felony involving dishonesty or breach of trust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business of insurance.</p> <p>(B) A Person in the business of insurance shall not knowingly or intentionally permit a Person convicted of a felony involving dishonesty or breach of trust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of insurance.</p> <p>Section 7. Civil Remedies</p> <p>(a) Any Person injured in his business or</p>	<p>(C) 적절한 면허 감독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보낸 모든 통지와, 그에 따른 모든 처분은 공공기록으로 남긴다.</p> <p>(2) (A) 부정한 행위 또는 신뢰 위반으로 중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보험업을 할 수 없다.</p> <p>(B) 보험업을 하는 자가 중죄의 판결을 받을 부정한 행위 또는 신뢰 위반을 알았거나 의도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보험업을 할 수 없다.</p> <p>제7조 민사적 구제</p> <p>(a) 제3조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 또는 사업에</p>

원 문	번 역 문
<p>property by reason of a violation of Section 3 may recover therefor from the Person[s] violating Section 3, in any appropriate ____ Court the following:</p> <p>(1) Return of any profit, benefit, compensation or payment received by the Person violating Section 3 directly resulting from said violation;</p> <p>(2) Reasonable attorneys fees, related legal expenses, including internal legal expenses and court costs, not to exceed \$5,000;</p> <p>An action maintained under this subparagraph may neither be certified as a class action nor be made part of a class action.</p> <p>(b) Any Person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 by reason of a violation of Section 2 may recover therefor from the Person[s] violating Section 2, in any appropriate ____ Court the following:</p> <p>(1) Return of any profit, benefit, compensation or payment received by the Person violating Section 2</p>	<p>손해를 입은 자는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손해에 관한 다음의 배상을 적정한 ____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 <p>(1) 제3조 위반자가 위반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 혜택, 보상이나 지급의 반환;</p> <p>(2) 5,000 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검토와 법원 비용을 포함한 관련 법률 비용과 합리적 변호사 비용;</p> <p>이 항에 따른 (소송) 행위는 집단소송 또는 집단소송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p> <p>(b) 제2조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 또는 사업에 손해를 입은 자는 제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손해에 관한 다음의 배상을 적정한 ____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 <p>(1) 제2조 위반자가 위반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 혜택, 보상이나 지급의 반환;</p>

원 문	번 역 문
<p>directly resulting from said violation;</p> <p>(2) Reasonable attorneys fees, related legal expenses, including internal legal expenses and court costs;</p> <p>(3) All other economic damages directly resulting from the violation of Section 2;</p> <p>(4) Reasonable investigative fees based on a reasonable estimate of the time and expense incurre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violation(s) of Section 2 proved at trial;</p> <p>(5) A penalty of no less than \$_____ and no greater than \$_____.</p> <p>An action maintained under this subparagraph may neither be certified as a class action nor be made part of a class action.</p> <p>(c) Any Person injured in his or her business or property by a Person violating Section 2, upon a showing of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such violation was part of a Pattern or Practice of such violations, shall be</p>	<p>(2) 5,000 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검토와 법원 비용을 포함한 관련 법률 비용과 합리적 변호사 비용;</p> <p>(3) 제2조 위반으로 인한 다른 모든 경제적 손해;</p> <p>(4) 재판상 제2조 위반의 조사에 관계하여 합리적으로 측정된 시간과 비용에 근거한 합리적 조사 비용;</p> <p>(5) _____ 달러보다 높고 _____ 달러보다 낮은 벌금.</p> <p>이 항에 따른 (소송) 행위는 집단소송 또는 집단소송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p> <p>(c) 제2조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 또는 사업에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위반이 그 위반의 실행 또는 유형에 한 부분이었음을 명확하고 확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경우에,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의 3배 배상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3배 배상에 대한 청구는 위반 행위</p>

원 문	번 역 문
<p>entitled to recover threefold the injured Person's economic damages. An action for treble damages must be brought within ____ year(s) of such violation. One third of the treble damages awarded shall be payable to the state to be us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violations of this Act or other fraudulent behavior relating to Insurance Transactions, and/or for public education relating to insurance fraud. An action maintained under this subparagraph may neither be certified as class action nor be made part of a class action, unless the violations of Section 2 giving rise to the action resulted in criminal conviction of the violator[s] under Section 4.</p> <p>(d) The State Attorney General, District Attorney or prosecutorial agency shall have authority to maintain Civil proceedings on behalf of the State Insurance Department and any victims</p>	<p>시로 부터 ____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받아야할 3배 배상액의 3분의 1은 국가에 지급하여 보험 사기 관련 공공 교육, 보험 계약 관련 기타 사기적 행위 또는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수사와 집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 항에 따른 (소송) 행위는, 제2조 위반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4조 위반의 형사적 유죄 판결의 (소송) 행위가 되지 않는 한, 집단소송 또는 집단소송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p> <p>(d) 주(州) 법무부장관, 지방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주(州)보험국과 제2조 위반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 소송 행위에서, 법원은 신속하게 변론 개시와 그에 의한 결정을 한다. 그에</p>

원 문	번 역 문
<p>of violations of Section 2. In any such action, the court shall proceed as soon as practicable to the hearing and determination thereof. Pending final determination thereof, the court may at any time enter such restraining orders or prohibitions, or take such other actions, including the acceptance of satisfactory performance bonds, as it shall deem proper.</p> <p>(…)</p> <p>(…)</p>	<p>의한 최종 결정의 유보시, 법원은 언제라도, 채권 만족을 위한 이행의 수락을 포함하여,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금지 명령 또는 금지를 시행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p> <p>(…)</p> <p>(…)</p>

나. 뉴욕주 「보험법」과 「형법」

이러한 모델법이 실제로 입법화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뉴욕주법을 살펴본다. 뉴욕주 「보험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State - Insurance)¹⁹⁾은 제401조부터 제411조까지 ‘보험사기 방지 (Insurance Frauds Preven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상당

19) [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rch.cgi?NVLWO:\(2015. 10. 30. 방문, 이 웹페이지에서 ISC\(Insurance\) 참조](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rch.cgi?NVLWO:(2015. 10. 30. 방문, 이 웹페이지에서 ISC(Insurance) 참조)

부분은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조직과 수사관의 권한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고 보험사기에 관한 실질적 내용은 동법 제403조에서 규정한다. 그런데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 사기에 대한 정의를 모두 뉴욕주 「형법」에 맡기고 있다. 다만 뉴욕주의 보험 사기 감독관은 보험 사기를 한 자에 대하여 각 위반 행위 마다 배상과 더불어 5,000달러 이하의 민사적 제재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이다(뉴욕주 「보험법」 제403조).

뉴욕주 「형법」(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State - Penal)²⁰⁾은 제176.00조부터 제176.70조까지 ‘보험사기(Insurance Fraud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법 제176.00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제176.05조부터 제176.35조까지는 일반적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제176.40조부터 제176.70조까지는 사기에 의해 생명(보험)을 양도하는 경우²¹⁾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불어 제176.35조와 제176.70조에서는 5년 이내의 재범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 사기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모델보험사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보험자 등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하여 금전 등의 이익을 취하는 다양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 등과 이익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할 뿐이다.

보험 사기의 경범죄와 중죄를 가르는 기준은 1,000달러이다(뉴욕주

20) [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rch.cgi?NVLWO:\(2015. 10. 30. 방문, 이 웹페이지에서 PEN\(Penal\) 참조](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rch.cgi?NVLWO:(2015. 10. 30. 방문, 이 웹페이지에서 PEN(Penal) 참조)

21) 생명보험계약의 양도보다 넓은 범위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모든 형태의 계약에 대한 양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76.15조). 1,000달러를 넘으면 보험 사기의 중죄가 성립되며, 보험 사기의 중죄는 3,000달러, 50,000달러, 1,000,000달러를 기준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뉴욕주 「형법」 제176.20조, 제176.25조, 제176.30조).

원 문	번 역 문
<p>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State Insurance</p> <p>(…)</p> <p>§ 403. Prohibitions.</p> <p>(a) In this article, "fraudulent insurance act" means insurance fraud as defined in section 176.05 of the penal law; and the terms "personal insurance" and "commercial insurance"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cribed to them by section 176.00 of such law.</p> <p>(b) For the purpose of section one hundred nine of this chapter, it is a violation of this chapter for any individual,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o commit a fraudulent insurance act or a fraudulent life</p>	<p>뉴욕주 통합법 보험</p> <p>(…)</p> <p>제403조 금지.</p> <p>(a) 이 조에서, “사기적 보험 행위”란 「형법」 제176.05조에서 정의하는 보험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동법 제176.00조에서 기술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p> <p>(b) 이 장의 제109조의 취지에 따라,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개인, 기업, 단체 또는 법인이 사기적 보험 행위 또는 사기적 보험 양도 행위를 한 것은 이 장에 위반한 것이다.</p>

원 문	번 역 문
<p>settlement act.</p> <p>(c) In addition to any criminal liability arising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 superintendent shall be empowered to levy a civil penalty not exceeding five thousand dollars and the amount of the claim for each violation upon any person, including those persons and their employees licensed pursuant to this chapter, who is found to have:</p> <p>(i) committed a fraudulent insurance act, fraudulent life settlement act or otherwise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or</p> <p>(ii) knowingly and with intent to defraud files, makes, or assists, solicits or conspires with another to file or make an application for a premium reduction, pursuant to subsection (a) of section two thousand three hundred thirty-six of this chapter, containing any materially false information or which, for the purpose of misleading,</p>	<p>(c)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에 더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는 보험사기)감독관은 이 장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들과 그 피용인을 포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각 위반 행위 마다 배상 청구액과 5,000달러 이하의 민사적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p> <p>(i) 사기적 보험 행위, 사기적 생명(보험)양도 행위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다른 행위; 또는</p> <p>(ii)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또는 속이려는 목적으로 중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숨겨서, 고의 또는 사기의 의도로, 이 장의 제2336조의 제(a)항에 따라 보험료 감액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 작성 또는 그 제출 또는 작성을 위해 지원, 요청 또는 음모하는 행위.</p>

원 문	번 역 문
<p>conceals information concerning any fact material thereto.</p> <p>(…)</p> <p>(f) In this article, "fraudulent life settlement act" means a fraud as defined in section 176.40 of the penal law.</p>	<p>(…)</p> <p>(f) 이 조에서, “사기적 생명(보험) 양도 행위”란 「형법」 제176.40조에 정의한 사기와 같은 의미이다.</p>

원 문	번 역 문
<p>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State Penal</p> <p>(…)</p> <p>§ 176.05 Insurance fraud; defined.</p> <p>A fraudulent insurance act is committed by any person who, knowingly and with intent to defraud presents, causes to be presented, or prepares with knowledge or belief that it will be presented to or by an insurer, self insurer, or purported insurer, or purported self insurer, or any agent thereof:</p> <p>1. any written statement as part of, or</p>	<p>뉴욕주 통합법 형법</p> <p>(…)</p> <p>제176.05조 보험사기; 정의.</p> <p>누구든지 고의와 사기의 의도로 보험자, 자가 보험자, 또는 보험자로 알려진 자, 또는 자가 보험자로 알려진 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제공, 제공하도록 원인 제공, 또는 제공될 것이라고 알거나 믿고서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기적 보험 행위가 된다.</p> <p>1. 그 또는 그녀가 (다음의 내용이라고) 알</p>

원 문	번 역 문
<p>in support of, an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or the rating of a commercial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or evidence of self insurance for commercial insurance or commercial self insurance, or a claim for payment or other benefit pursuant to an insurance policy or self insurance program for commercial or personal insurance that he or she knows to:</p> <p>(a) contain materially false information concerning any fact material thereto; or</p> <p>(b) conceal, for the purpose of misleading, information concerning any fact material thereto; or</p> <p>2. any written statement or other physical evidence as part of, or in support of, an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a health insurance policy, or a policy or contract or other authorization that provides or allows coverage for, membership or enrollment in, or other services of a</p>	<p>고 있는, 손해자가보험이나 손해보험을 위한 자가보험의 증명서나 증거 혹은 손해보험증권의 평가나 지급에 관한 신청, 또는 보험증권이나 손해에 대비한 자가보험계획 혹은 인보험에 따른 지급이나 다른 혜택의 청구에 대한 지원이나 그 한 부분으로서의 서면 진술:</p> <p>(a) 그것에 대한 중요 사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는</p> <p>(b) 속이려는 목적으로 그것에 대한 중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 또는</p> <p>2. 그 또는 그녀가(다음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 건강보험증권의 발행에 관한 신청, 또는 공공 혹은 민간 건강 계획의 보장, 회원, 등록,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증권, 계약, 기타 권한, 또는 그러한 증권, 계약, 계획에 대한 지급, 서비스, 기타 혜택의 청구에 대한 지원이나 그 한 부분으로서 다른 물리적 증거 또는 서면진술:</p>

원 문	번 역 문
<p>public or private health plan, or a claim for payment, services or other benefit pursuant to such policy, contract or plan that he or she knows to:</p> <p>(a) contain materially false information concerning any material fact thereto; or</p> <p>(b) conceal, for the purpose of misleading, information concerning any fact material thereto.</p> <p>Such policy or contract or plan or authorization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ose issued or operating pursuant to any public or governmentally-sponsored or supported plan for health care coverage or services or those otherwise issued or operated by entities authorized pursuant to the public health law. For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an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a health insurance policy" shall not include (i) any application for a health insurance policy or contract approved by the superintendent of</p>	<p>(a) 그것에 대한 중요 사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는</p> <p>(b) 속이려는 목적으로 그것에 대한 중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p> <p>그러한 증권 또는 계약 또는 계획 또는 권한은,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공공 또는 정부 지원 또는 건강 보장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또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허가받은 단체에 의해 운영되거나 제공되는 다른 것에 따라서 운영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세부 항목의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증권의 발행에 대한 신청"은 (i) 「보험법」의 제3216조, 제4304조, 제4321조, 제4322조에 따른 금융서비스 감독자가 승인한 건강보험증권 또는 계약에 대한 신청 또는 사적 또는 직접 지급 시장에 속한 금융서비스 감독자가 승인한 건강보험증권 또는 계약에 대한 신청; 또는 (ii) 금융서비스 감독자가 승인한 단체계약</p>

원 문	번 역 문
<p>financial servic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three thousand two hundred sixteen, four thousand three hundred four, four thousand three hundred twenty-one or four thousand three hundred twenty-two of the insurance law or any other application for a health insurance policy or contract approved by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individual or direct payment market; or (ii) any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evidencing coverage under a self-insured plan or under a group contract approved by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services.</p> <p>§ 176.10 Insurance fraud in the fifth degree.</p> <p>A person is guilty of insurance fraud in the fifth degree when he commits a fraudulent insurance act.</p> <p>Insurance fraud in the fifth degree is a class A misdemeanor.</p>	<p>또는 자기보험계획에 따라 증거가 보장되는 증서에 대한 신청을 포함하지 않는다.</p> <p>제176.10조 5등급 보험사기.</p> <p>사기적 보험 행위를 한 자는 5등급 보험 사기의 유죄가 된다.</p> <p>5등급 보험 사기는 A종 경범죄가 된다.</p>

원 문	번 역 문
<p>§ 176.15 Insurance fraud in the fourth degree.</p> <p>A person is guilty of insurance fraud in the fourth degree when he commits a fraudulent insurance act and thereby wrongfully takes, obtains or withholds, or attempts to wrongfully take, obtain or withhold property with a value in excess of one thousand dollars.</p> <p>Insurance fraud in the fourth degree is a class E felony.</p>	<p>제176.15조 4등급 보험사기.</p> <p>사기적 보험 행위를 하고 그에 의하여 부정하게 1,00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가지거나 얻거나 보유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가지거나 얻거나 보유하려고 시도한 자는 4등급 보험 사기의 유죄가 된다.</p> <p>4등급 보험 사기는 E종 중죄가 된다.</p>
<p>§ 176.20 Insurance fraud in the third degree.</p> <p>A person is guilty of insurance fraud in the third degree when he commits a fraudulent insurance act and thereby wrongfully takes, obtains or withholds, or attempts to wrongfully take, obtain or withhold property with a value in excess of three thousand dollars.</p> <p>Insurance fraud in the third degree is a class D felony.</p>	<p>제176.20조 3등급 보험사기.</p> <p>사기적 보험 행위를 하고 그에 의하여 부정하게 3,00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가지거나 얻거나 보유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가지거나 얻거나 보유하려고 시도한 자는 3등급 보험 사기의 유죄가 된다.</p> <p>3등급 보험 사기는 D종 중죄가 된다.</p>

원 문	번 역 문
<p>§ 176.25 Insurance fraud in the second degree.</p> <p>A person is guilty of insurance fraud in the second degree when he commits a fraudulent insurance act and thereby wrongfully takes, obtains or withholds, or attempts to wrongfully take, obtain or withhold property with a value in excess of fifty thousand dollars.</p> <p>Insurance fraud in the second degree is a class C felony.</p>	<p>제176.25조 2등급 보험사기.</p> <p>사기적 보험 행위를 하고 그에 의하여 부정하게 50,00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가지거나 얻거나 보유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가지거나 얻거나 보유하려고 시도한 자는 2등급 보험 사기의 유죄가 된다.</p> <p>2등급 보험 사기는 C종 중죄가 된다.</p>
<p>§ 176.30 Insurance fraud in the first degree.</p> <p>A person is guilty of insurance fraud in the first degree when he commits a fraudulent insurance act and thereby wrongfully takes, obtains or withholds, or attempts to wrongfully take, obtain or withhold property with a value in excess of one million dollars.</p> <p>Insurance fraud in the first degree is a class B felony.</p>	<p>제176.30조 1등급 보험사기.</p> <p>사기적 보험 행위를 하고 그에 의하여 부정하게 1,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가지거나 얻거나 보유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가지거나 얻거나 보유하려고 시도한 자는 1등급 보험 사기의 유죄가 된다.</p> <p>1등급 보험 사기는 B종 중죄가 된다.</p>

원 문	번 역 문
<p>§ 176.35 Aggravated insurance fraud.</p> <p>A person is guilty of aggravated insurance fraud in the fourth degree when he commits a fraudulent insurance act, and has been previously convicted within the preceding five years of any offense, an essential element of which is the commission of a fraudulent insurance act.</p> <p>Aggravated insurance fraud in the fourth degree is a class D felony.</p>	<p>제176.35조 가중적 보험 사기.</p> <p>누구든지 사기적 보험 사기를 하고 사기적 보험 사기 행위를 주요 요소로 하는 범죄로 종전 5년 이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4등급의 가중적 보험 사기의 유죄가 된다.</p> <p>4등급의 가중적 보험사기는 D종 중죄가 된다.</p>
<p>§ 176.40 Fraudulent life settlement act; defined.</p> <p>A fraudulent life settlement act is committed by any person who, knowingly and with intent to defraud, presents, causes to be presented, or prepares with knowledge or belief that it will be presented to, or by, a life settlement provider, life settlement broker, life settlement intermediary, or any agent thereof, or to any owner any written statement or other physical</p>	<p>제176.40조 사기적 생명(보험) 양도 행위; 정의.</p> <p>사기적 생명(보험) 양도 행위란 누구든지 고의와 사기의 의도로 생명(보험) 양도 제공자, 생명(보험) 양도 중개인, 생명(보험) 양도 중계자,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생명(보험) 양도 계약에 대한 신청의 지원 또는 그 한 부분으로서 서면 진술 또는 다른 물리적 증거의 소유자에 대하여 또는 그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제공, 제공하도록 원인 제공, 또는 제공될 것이라고 알거나 믿고서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기적 보험 행위가 된다.</p>

원 문	번 역 문
<p>evidence as part of, or in support of, an application for a life settlement contract, a claim for payment or other benefit under a life settlement contract, which the person knows to:</p> <p>(1) contain materially false information concerning any material fact thereto;</p> <p>or</p> <p>(2) conceal, for the purpose of misleading, information concerning any fact material thereto.</p> <p>(…)</p>	<p>(1) 그것에 대한 중요 사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는</p> <p>(2) 속이려는 목적으로 그것에 대한 중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p> <p>(…)</p>

4. 영국

가. 「2015년 보험법」

영국은 보험 사기에 대하여 민사적인 배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 제12조에서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보험자는 사기적 청구에 관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사기적 보험 행위 시부터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보험 사기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자는 기존에 받았던 보험료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사기적 보험 행위 이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모든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적 보험 행위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본래의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2015년 보험법」 제12조에서는 보험 사기의 구체적 유형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사기적 청구’(Fraudulent claim)라고만 하고 있다. 즉 ‘보험 사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 보험 사기는 판례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이 정해지게 된다. 관련된 연구²²⁾에 따르면 보험금의 10% 이상을 사기적으로

22) 가정준·임채욱,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청구의 법적 분석 및 대책”, 법학연구 제55권 제3호 통권 제81호, 2014. 8, 75-76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보고 보험금 청구액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 또는 과실비율을 다르게 하기 위하여 진술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된다.

「2015년 보험법」에서 특이한 점은 최대선의원칙이 제14조에 별도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최대선의원칙’(Good faith)이란 우리나라의 민법 제2조²³⁾의 신의성실과 유사한 것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 계약상의 일반적 원칙 중 하나로 인정된다.

그런데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은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어 일반적으로 최대선의원칙이 보험계약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에 최대선의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2012년 소비자보험법」(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 Act 2012)²⁴⁾과 「2015년 보험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축소시키고 있다(「2015년 보험법」 제14조).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최대선의의무가 적용되어 고지의무 위반, 고의 없는 부실 고지 등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변화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가 없어지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질의 사항에 답하기만 하면 되며, 고의 없는 부실 고지의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보

23) 「민법」(법률 제12777호, 2014. 10. 15.)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6/contents>(2015. 10. 30. 방문)

험금만 감액된다.²⁵⁾ 즉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사기의 고의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이나 부실 고지 등이 된 경우에 보험자가 최대선의원칙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지 않는 법적 보호 수단을 갖춘 것이다.

원 문	번 역 문
<p>Insurance Act 2015</p> <p>(…)</p> <p>12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²⁶⁾</p> <p>(1) If the insured makes a fraudulent claim under a contract of insurance—</p> <p>(a)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claim,</p> <p>(b) the insurer may recover from the insured any sums paid by the insurer to the insured in respect of the claim, and</p> <p>(c) in addition, the insurer may by notice to the insured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effect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p> <p>(2) If the insurer does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p>	<p>2015년 보험법</p> <p>(…)</p> <p>제12조 사기적 청구에 대한 배상</p> <p>(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사기적 청구를 한 경우 -</p> <p>(a) 보험자는 그 청구를 지불할 책임이 없다,</p> <p>(b) 보험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한 총 금액을 피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p> <p>(c) 더불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으로 사기적 행위 시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p> <p>(2) 만일 보험자가 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경우 -</p>

25) (주 10) 참조

2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4/section/12\(2015. 11. 2. 방문\)](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4/section/12(2015. 11. 2. 방문)

원 문	번 역 문
<p>(a) it may refuse all liability to the insured under the contract in respect of a relevant event occurring after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p> <p>(b) it need not return any of the premiums paid under the contract.</p> <p>(3) Treating a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under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with respect to a relevant event occurring before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p> <p>(4) In subsections (2)(a) and (3), “relevant event” refers to whatever gives rise to the insurer’s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and includes, for example, the occurrence of a loss, the making of a claim, or the notification of a potential claim, depending on how the contract is written).</p> <p>(…)</p>	<p>(a) 사기적 보험 행위 이후 발생한 그 계약 관련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p> <p>(b) 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된 어떤 보험료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p> <p>(3)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기적 행위 전에 발생한 계약 관련 사고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4) (2)(a)와 (3)에서, “관련 사고”란 그 계약에 의해 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책임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손실의 발생, 청구 또는 잠재적 청구의 통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p>

원 문	번 역 문
<p>14 Good faith²⁷⁾</p> <p>(1) Any rule of law permitting a party to a contract of insurance to avoid the contract on the ground that the utmost good faith has not been observed by the other party is abolished.</p> <p>(2) Any rule of law to the effect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on the utmost good faith is modified to the extent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p> <p>(…)</p>	<p>제14조 최대선의원칙</p> <p>(1)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최대선의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법적 규범²⁸⁾을 폐지한다.</p> <p>(2) 최대선의원칙에 근거를 둔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적 규범은 「2012년 소비자보험(공개와 고지)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정한 범위 내로 수정된다.</p> <p>(…)</p>

2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4/section/14>(2015. 11. 2. 방문)

28) 일반적으로는 ‘법의 지배’라는 용어를 쓴다. 법의 지배의 원리는 영국에서 성립되어, 영국 불문헌법(不文憲法)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법의 지배의 원리는 자의적 전제권력(專制權力)이 아닌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보통법(common law)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平等), 판례(判例)를 통하여 형성된 인권(人權)에 관한 헌법상의 일반원칙의 존중을 내용으로 한다(두산백과사전 참조); 자세한 설명은 영국 의회 웹사이트(<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607/ldselect/ldconst/151/15115.htm>, 2015. 10. 30. 방문) 참조

나. 「2006년 사기법」

영국의 「2006년 사기법」에서는 사기의 유형을 부정한 표시, 정보의 미공개, 직위 남용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2006년 사기법」 제2조). 또한 사기로 인한 이득과 손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거의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2006년 사기법」 제5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보험 사기는 대체로 부정한 표시에 의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별도로 보험 사기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 문	번 역 문
<p>Fraud Act 2006²⁹⁾</p> <p>1 Fraud</p> <p>(1) A person is guilty of fraud if he is in breach of any of the sections listed in subsection (2) (which provide for different ways of committing the offence).</p> <p>(2) The sections are—</p> <p>(a) section 2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p> <p>(b) section 3 (fraud by failing to disclose</p>	<p>2006년 사기법</p> <p>제1조 사기</p> <p>(1) 누구든지 제2항에 나열된 조항(그 조항에서는 서로 다른 위반 행위를 규정한다)에 위반하면 사기로 유죄가 된다.</p> <p>(2)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p> <p>(a) 제2조 (부정한 표시에 의한 사기),</p> <p>(b) 제3조 (정보의 미공개에 의한 사기),</p>

2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6/35/contents>(2015. 11. 2. 방문)

원 문	번 역 문
<p>information), and (c) section 4 (fraud by abuse of position). (3) A person who is guilty of fraud is liable— (a)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2 months or to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or to both);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0 years or to a fine (or to both). (...)</p>	<p>그리고 (c) 제4조 (직위 남용에 의한 사기). (3) 사기로 유죄인 자는 (다음의) 처벌이 된다 - (a) 약식 재판으로,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을 넘지 않는 벌금 (또는 병과); (b) 정식 재판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 (...)</p>
<p>2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1) A person is in breach of this section if he— (a) dishonestly makes a false representation, and (b) intends, by making the representation— (i) to make a gain for himself or another, or (ii) to cause loss to another or to</p>	<p>제2조 부정한 표시에 의한 사기 (1) 누구든지 만일 (다음의 행위를 한다면) 이 조항에 위반 된다 - (a) 거짓으로 부정한 표시를 한 경우, 그리고 (b) 부정한 표시를 함으로써 (다음을) 의도한 경우 - (i)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 또는 (ii)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다른</p>

원 문	번 역 문
<p>expose another to a risk of loss.</p> <p>(2) A representation is false if—</p> <p>(a) it is untrue or misleading, and</p> <p>(b) the person making it knows that it is, or might be, untrue or misleading.</p> <p>(3) “Representation” means any representation as to fact or law, including a representation as to the state of mind of—</p> <p>(a) the person making the representation, or</p> <p>(b) any other person.</p> <p>(4) A representation may be express or implied.</p> <p>(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representation may be regarded as made if it (or anything implying it) is submitted in any form to any system or device designed to receive, convey or respond to communications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p>	<p>사람을 손실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p> <p>(2) 만일 (다음에 해당하면) 부정한 표현이 된다 -</p> <p>(a)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p> <p>(b)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경우.</p> <p>(3) “표시”란 (다음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여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모든 표시를 의미한다 -</p> <p>(a) 그 사람이 표시한 것, 또는</p> <p>(b) 다른 사람.</p> <p>(4) 표시는 표현될 수 있고 묵시적이어도 된다.</p> <p>(5) 이 조의 목적을 위해 만일 표시(또는 표시를 내포하는 어떤 것)가 통신(사람이 관여하건 안 하건)을 위해 수신, 전송 또는 응답하도록 고안된 장치 또는 시스템에 형태를 갖춰 제출된 경우에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p>

원 문	번 역 문
<p>(…)</p> <p>5 “Gain” and “loss”</p> <p>(1) The references to gain and loss in sections 2 to 4 are to be rea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p> <p>(2) “Gain” and “loss”—</p> <p>(a) extend only to gain or loss in money or other property;</p> <p>(b) include any such gain or loss whether temporary or permanent; and “property” means any property whether real or personal (including things in action and other intangible property).</p> <p>(3) “Gain” includes a gain by keeping what one has, as well as a gain by getting what one does not have.</p> <p>(4) “Loss” includes a loss by not getting what one might get, as well as a loss by parting with what one has.</p> <p>(…)</p>	<p>(…)</p> <p>제5조 “이득”과 “손해”</p> <p>(1) 제2조에서 제4조까지 거론한 이득과 손해는 이 조와 맞추어 해석한다.</p> <p>(2) “이득”과 “손해”는 -</p> <p>(a) 금전 또는 다른 재산의 범위로 한한다;</p> <p>(b) 그 이득과 손해는 일시적이건 항구적이건 상관없이 포함된다;</p> <p>그리고 “재산”이란 현존 가치 또는 개인적 가치(어떤 행위와 기타 무형적 재산을 포함한다)에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p> <p>(3) “이득”은 누군가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얻는 이득은 물론,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득을 포함한다.</p> <p>(4) “손해” 누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는 손해는 물론, 가질 수 있던 것을 가질 수 없는 손해를 포함한다.</p> <p>(…)</p>

5. 독일

가. 「보험계약법」

독일의 「보험계약법」(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은 우리나라의 「상법」 보험편과 가장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법」 보험편은 보험 사기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독일의 「보험계약법」은 보험 사기나 유사한 행위를 규제하는 명백한 언급이 있다.

우선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다(「보험계약법」 제22조).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사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되거나 감경된다(「보험계약법」 제81조).

만일 사기로 체결된 계약이 실제 보험 대상물의 가치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초과보험’(Übersicherung)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상황을 안 시점까지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보험계약법」 제74조). 또한 보험계약자가 사기의 의도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보험 대상물의 가치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중복보험’(Mehrfachversicherung)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보험계약법」 제78조).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과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무효로 처리되며, 이 역시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보험계약법」 제80조).

원 문	번 역 문
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 ³⁰⁾	보험계약법 ³¹⁾
(…)	(…)
<p>§ 22 Arglistige Täuschung</p> <p>Das Recht des Versicherers, den Vertrag wegen arglistiger Täuschung anzufechten, bleibt unberührt.</p>	<p>제22조 약의에 의한 기망행위</p> <p>약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자의 권리는 배제되지 않는다.</p>
(…)	(…)
<p>§ 74 Überversicherung</p> <p>(1) Übersteigt die Versicherungssumme den Wert des versicherten Interesses (Versicherungswert) erheblich, kann jede Vertragspartei verlangen, dass die Versicherungssumme zur Beseitigung der Überversicherung unter</p>	<p>제74조 초과보험</p> <p>(1) 보험금액이 피보험이익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당사자는 초과보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을 보험료의 비율에 맞추어 즉시 감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30) http://www.gesetze-im-internet.de/vvg_2008/index.html(2015. 11. 2. 방문)

31) 보험계약법(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 최종개정: 2015. 7. 17. BGBl. I S. 1245)을 외국법률번역DB(2007. 11. 23. BGBl. I S. 2631)를 참조하여 수정 번역하였음.

원 문	번 역 문
<p>verhältnismäßiger Minderung der Prämie mit sofortiger Wirkung herabgesetzt wird.</p> <p>(2) Schließt der Versicherungsnehmer den Vertrag in der Absicht, sich aus der Überversicherung einen rechtswidrigen Vermögensvorteil zu verschaffen, ist der Vertrag nichtig; dem Versicherer steht die Prämie bis zu dem Zeitpunkt zu, zu dem er von den die Nichtigkeit begründenden Umständen Kenntnis erlangt.</p> <p>(…)</p>	<p>(2)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에 의하여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피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상황을 안 시점까지의 보험료는 보험자에게 귀속한다.</p> <p>(…)</p>
<p>§ 78 Haftung bei Mehrfachversicherung</p> <p>(…)</p> <p>(3) Hat der Versicherungsnehmer eine Mehrfachversicherung in der Absicht vereinbart, sich dadurch einen rechtswidrigen Vermögensvorteil zu verschaffen, ist jeder in dieser Absicht geschlossene Vertrag nichtig; dem Versicherer steht die Prämie bis zu dem</p>	<p>제78조 중복보험인 경우의 책임</p> <p>(…)</p> <p>(3) 보험계약자가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피할 의도로 중복보험에 합의한 경우라면 이러한 의도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 보험자에게 무효가 되는 상황을 안 시점까지의 보험료는 보험자에게 귀속한다.</p>

원 문	번 역 문
<p>Zeitpunkt zu, zu dem er von den die Nichtigkeit begründenden Umständen Kenntnis erlangt.</p> <p>(…)</p>	<p>(…)</p>
<p>§ 80 Fehlendes versichertes Interesse</p> <p>(…)</p> <p>(3) Hat der Versicherungsnehmer ein nicht bestehendes Interesse in der Absicht versichert, sich dadurch einen rechtswidrigen Vermögensvorteil zu verschaffen, ist der Vertrag nichtig; dem Versicherer steht die Prämie bis zu dem Zeitpunkt zu, zu dem er von den die Nichtigkeit begründenden Umständen Kenntnis erlangt.</p>	<p>제80조 피보험이익의 결여</p> <p>(…)</p> <p>(3) 보험계약자가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피할 의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익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상황을 안 시점까지의 보험료는 보험자에게 귀속한다.</p>
<p>§ 81 Herbeiführung des Versicherungsfalles</p> <p>(1) Der Versicherer ist nicht zur Leistung verpflichtet,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vorsätzlich den Versicherungsfall herbeiführt.</p> <p>(2) Führt der Versicherungsnehmer den</p>	<p>제81조 보험사고의 초래</p> <p>(1)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고의로 초래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p> <p>(2)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중과실에 의하</p>

원 문	번 역 문
<p>Versicherungsfall grob fahrlässig herbei, ist der Versicherer berechtigt, seine Leistung in einem der Schwere des Verschuldens des Versicherungsnehmers entsprechenden Verhältnis zu kürzen.</p> <p>(…)</p>	<p>여 일으켰다면 보험자는 자신의 급부를 보험 계약자의 과실의 정도에 상응하여 감액할 권한이 있다.</p> <p>(…)</p>

나. 「형법」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제263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형법」의 사기죄³²⁾와 같은 형태로 되어있다. 즉 포괄적으로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도 포함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별도로 「형법」 제265조에서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 등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독일 「형법」 제265조의 보험남용죄는 보험 사기가 「형법」 제263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처벌 규정이다. 즉 독일 「형법」 제263조의 사기죄에 대하여 보충적인 규정이다.

32) (주 8) 참조

원 문	번 역 문
<p>Strafgesetzbuch³³⁾</p> <p>(…)</p> <p>§ 263 Betrug</p> <p>(1) Wer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rechtswidrigen Vermögensvorteil zu verschaffen, das Vermögen eines anderen dadurch beschädigt, daß er durch Vorspiegelung falscher oder durch Entstellung oder Unterdrückung wahrer Tatsachen einen Irrtum erregt oder unterhä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p> <p>(2) Der Versuch ist strafbar.</p> <p>(…)</p> <p>(…)</p> <p>§ 265 Versicherungsmißbrauch</p> <p>(1) Wer eine gegen Untergang,</p>	<p>형법³⁴⁾</p> <p>(…)</p> <p>제263조 사기</p> <p>(1) 위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거나 진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여 착오를 야기 또는 유지시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p> <p>(2) 미수범은 처벌한다.</p> <p>(…)</p> <p>(…)</p> <p>제265조 보험남용죄</p> <p>(1)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p>

33) <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index.html>(2015. 11. 2. 방문)

34) 형법(Strafgesetzbuch, 최종개정: 2015. 10. 20. BGBl. I S. 1722)을 외국법률번역DB(2007. 12. 21. BGBl. I S. 3198)를 참조하여 수정 번역하였음.

원 문	번 역 문
<p>Beschädigung, Beeinträchtigung der Brauchbarkeit, Verlust oder Diebstahl versicherte Sache beschädigt, zerstört, in ihrer Brauchbarkeit beeinträchtigt, beiseite schafft oder einem anderen überläßt, um sich oder einem Dritten Leistungen aus der Versicherung zu verschaff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wenn die Tat nicht in § 263 mit Strafe bedroht ist.</p> <p>(2) Der Versuch ist strafbar.</p> <p>(…)</p>	<p>위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파괴, 그 사용을 침해·제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자는, 만일 그 행위가 제263조의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p> <p>(2) 미수범은 처벌한다.</p> <p>(…)</p>

6. 프랑스

가. 「보험법」

프랑스는 1807년에 이미 상법에 해상보험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로 보험에 관한 법제의 역사가 깊다.³⁵⁾ 현행 프랑스의 「보험법」(Code des assurances)은 보험 사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보험법」 전체에 걸쳐서 보험 사기의 예방과 보험 사기가 발생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보험계약자가 연령의 착오를 제외하고 보험자에게 고의로 사실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는 비록 그로 인하여 보험 사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며, 이미 지급한 보험료도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된다(「보험법」 제L113-8조). 이는 다른 국가의 보험 사기에 관한 규정보다도 더 강력한 규정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아니라 즉 금전적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사실 정보를 숨기겠다는 고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기로 체결된 계약이 실제 보험 대상물의 가치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초과보험’에 해당하면 당사자 일방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보험법」 제L121-3조), 보험계약자가 사

35)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15, 48면

기의 의도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보험 대상물의 가치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중복보험’에도 마찬가지로이다(「보험법」 제L121-4조).

원 문	번 역 문
<p>Code des assurances³⁶⁾ (Version consolidée au 24 octobre 2015)</p> <p>(…)</p> <p>Article L113-8</p> <p>Indépendamment des causes ordinaires de nullité, e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32-26, le contrat d’assurance est nul en cas de réticence ou de fausse déclaration intentionnelle de la part de l’assuré, quand cette réticence ou cette fausse déclaration change l’objet du risque ou en diminue l’opinion pour l’assureur, alors même que le risque omis ou dénaturé par l’assuré a été sans influence sur le sinistre.</p> <p>Les primes payées demeurent alors</p>	<p>보험법 (2015년 10월 24일 통합본)</p> <p>(…)</p> <p>제L113-8조</p> <p>일반 무효사유와는 별도로, 또한 L.132-26의 경우(연령의 착오)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함으로써, 이러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위험발생의 대상을 변경시키거나 보험자의 위험평가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비록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누락 또는 왜곡된 위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도 보험계약은 무효로 된다.</p> <p>제1문의 경우에 이미 지급한 보험료는 보험</p>

36)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3984&dateTexte=20151109>(2015. 11. 2. 방문)

원 문	번 역 문
<p>acquises à l'assureur, qui a droit au paiement de toutes les primes échues à titre de dommages et intérêts.</p> <p>Les dispositions du second alinéa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assurances sur la vie.</p> <p>(…)</p>	<p>자에게 귀속되며,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의 전액을 보험자는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p> <p>제2문의 규정은 생명보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p>
<p>Article L121-3</p> <p>Lorsqu'un contrat d'assurance a été consenti pour une somme supérieure à la valeur de la chose assurée, s'il y a eu dol ou fraude de l'une des parties, l'autre partie peut en demander la nullité et réclamer, en outre, des dommages et intérêts.</p> <p>(…)</p>	<p>제L121-3조</p> <p>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체결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에 사기나 기망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p>
<p>Article L121-4</p> <p>(…)</p> <p>Quand plusieurs assurances contre un même risque sont contractées de manière dolosive ou frauduleuse, les</p>	<p>제L121-4조</p> <p>(…)</p> <p>동일한 위험에 대해 다수의 보험계약이 사기를 수단으로 하여 또는 사기로 체결된 경우, 제121-3조 제1문이 적용된다.</p>

원 문	번 역 문
sanctions prévues à l'article L. 121-3, premier alinéa, sont applicables. (...)	(...)
(...)	(...)

나. 「형법」

프랑스의 「형법」(Code pénal) 제313-1조 사기죄는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를 처벌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 사기도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별도로 보험 사기에 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 문	번 역 문
Code pénal (...)	형법 (...)
Article 313-1³⁷⁾ L'escroquerie est le fait, soit par l'usage	제313-1조 사기라 함은 허위의 성명 또는 자격을 이용하

37)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jsessionid=B1394EA7FEBC36CF78E195DF19221DB5.tpdila15v_3?idArticle=LEGIARTI000006418192&cidTexte=LEGITEXT0000060707

원 문	번 역 문
<p>d'un faux nom ou d'une fausse qualité, soit par l'abus d'une qualité vraie, soit par l'emploi de manoeuvres frauduleuses, de tromper 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et de la déterminer ainsi, à son préjudice ou au préjudice d'un tiers, à remettre des fonds, des valeurs ou un bien quelconque, à fournir un service ou à consentir un acte opérant obligation ou décharge.</p> <p>L'escroquerie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75 000 euros d'amende.</p> <p>(...)</p>	<p>거나 진실한 자격을 남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사술을 동원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망하여 그 자 또는 제3자의 손해로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재산을 교부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채무이행 또는 채무의 면제를 승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사기는 5년의 징역 또는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p> <p>(...)</p>

7. 일본

가. 「보험법」

일본의 「보험법」(保險法)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으로 나누어 각각 보험 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사기를 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보험법」 제30조).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험사기 행위가 있는 후부터 보험계약의 해제가 있기 전까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보험법」 제31조). 또한 보험자는 보험 사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료 반환의 의무가 없다(「보험법」 제32조).

생명보험(「보험법」 제57조, 제59조, 제64조)과 상해질병정액보험(「보험법」 제86조, 제88조, 제93조)도 같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원 문	번 역 문
<p>보험法³⁸⁾</p> <p>(…)</p> <p>(重大事由による解除)</p> <p>第三十条 保険者は、次に掲げる事由がある場合には、損害保険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p> <p>(…)</p> <p>二 被保険者が、当該損害保険契約に基づく保険給付の請求について詐欺を行い、又は行おうとしたこと。</p> <p>(…)</p> <p>(解除の効力)</p> <p>第三十一条 損害保険契約の解除は、将来に向かってのみその効力を生ずる。</p> <p>2 保険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により損害保険契約の解除をした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損害をてん補する責任を負わない。</p> <p>(…)</p> <p>三 前条 同条各号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p>	<p>보험법</p> <p>(…)</p> <p>(중대사유에 의한 해제)</p> <p>제30조 보험자는 다음에 나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해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p> <p>2 피보험자가 당해 손해보험계약에 의거하는 보험금부의 청구에 관하여 사기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한 경우.</p> <p>(…)</p> <p>(해제의 효력)</p> <p>제31조 손해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p> <p>2 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 나열하는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p> <p>3 전조 동조 각호에 나열하는 사유가 발생한</p>

38) <http://law.e-gov.go.jp/htmlldata/H20/H20HO056.html>(2015. 11. 2. 방문)

원 문	번 역 문
<p>時から解除がされた時までに発生した保険事故による損害</p> <p>(保険料の返還の制限)</p> <p>第三十二条 保険者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保険料を返還する義務を負わない。</p> <p>一 保険契約者又は被保険者の詐欺又は強迫を理由として損害保険契約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した場合</p> <p>(…)</p> <p>(…)</p>	<p>때부터 해제가 된 때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p> <p>(보험료반환의 제한)</p> <p>제32조 보험자는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 <p>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에 관계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p> <p>(…)</p> <p>(…)</p>
<p>(重大事由による解除)</p> <p>第五十七条 保険者は、次に掲げる事由がある場合には、生命保険契約（第一号の場合にあつては、死亡保険契約に限る。）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p> <p>(…)</p> <p>二 保険金受取人が、当該生命保険契約に基づく保険給付の請求について詐欺を行い、又は行おうとしたこと。</p> <p>(…)</p>	<p>(중대사유에 의한 해제)</p> <p>제57조 보험자는 다음에 나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명보험계약(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계약에 한한다.)을 해제할 수 있다.</p> <p>(…)</p> <p>2 보험금수취인이 당해 생명보험계약에 의거하는 보험금부의 청구에 관하여 사기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한 경우.</p> <p>(…)</p>

원 문	번 역 문
<p>(…)</p> <p>(解除の効力)</p> <p>第五十九条 生命保険契約の解除は、将来に向かってのみその効力を生ずる。</p> <p>2 保険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により生命保険契約の解除をした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保険事故に関し保険給付を行う責任を負わない。</p> <p>(…)</p> <p>三 第五十七条 同条各号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時から解除がされた時まで発生した保険事故</p> <p>(…)</p>	<p>(…)</p> <p>(해제의 효력)</p> <p>제59조 생명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p> <p>2 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 나열하는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계약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금부를 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p> <p>3 제57조 동조 각호에 나열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제가 된 때까지 발생한 보험사고</p> <p>(…)</p>
<p>(保険料の返還の制限)</p> <p>第六十四条 保険者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保険料を返還する義務を負わない。</p> <p>一 保険契約者、被保険者又は保険金受取人の詐欺又は強迫を理由として生命保険契約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した場合</p> <p>(…)</p>	<p>(보험료반환의 제한)</p> <p>제64조 보험자는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 <p>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수취인의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에 관계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p> <p>(…)</p>

원 문	번 역 문
<p>(…)</p> <p>(重大事由による解除)</p> <p>第八十六条 保険者は、次に掲げる事由がある場合には、傷害疾病定額保険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p> <p>(…)</p> <p>二 保険金受取人が、当該傷害疾病定額保険契約に基づく保険給付の請求について詐欺を行い、又は行おうとしたこと。</p> <p>(…)</p>	<p>(…)</p> <p>(중대사유에 의한 해제)</p> <p>제86조 보험자는 다음에 나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p> <p>2 보험금수취인이 당해 상해질병정액보험 계약에 의거하는 보험금부의 청구에 관하여 사기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한 경우.</p> <p>(…)</p>
<p>(…)</p> <p>(解除の効力)</p> <p>第八十八条 傷害疾病定額保険契約の解除は、将来に向かってのみその効力を生ずる。</p> <p>2 保険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により傷害疾病定額保険契約の解除をした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由に基づき保険給付を行う責任を負わない。</p> <p>(…)</p> <p>三 第八十六条 同条各号に掲げる事由が生じた時から解除がされた時まで発生</p>	<p>(…)</p> <p>(해제의 효력)</p> <p>제88조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p> <p>2 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 나열하는 규정에 의하여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의거하여 보험금부를 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p> <p>3 제86조 동조 각호에 나열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제가 된 때까지 발생한 급부사유</p>

원 문	번 역 문
<p>した給付事由</p> <p>(…)</p> <p>(保険料の返還の制限)</p> <p>第九十三条 保険者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保険料を返還する義務を負わない。</p> <p>一 保険契約者、被保険者又は保険金受取人の詐欺又は強迫を理由として傷害疾病定額保険契約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した場合</p> <p>(…)</p> <p>(…)</p>	<p>(…)</p> <p>(보험료반환의 제한)</p> <p>제93조 보험자는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 <p>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수취인의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에 관계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p> <p>(…)</p> <p>(…)</p>

나. 「형법」

일본 「형법」 제246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형태의 포괄적 사기죄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 사기도 이 사기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를 갖고 있을 것, 기망행위가 있을 것, 보험자의 착오가 존재할 것, 보험자가 착오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 사기가 위

법일 것의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³⁹⁾

원 문	번 역 문
<p>刑法⁴⁰⁾</p> <p>(…)</p> <p>(詐欺)</p> <p>第二百四十六条 人を欺いて財物を交付させ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p> <p>2 前項の方法により、財産上不法の利益を得、又は他人にこれを得させ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p> <p>(…)</p>	<p>형법</p> <p>(…)</p> <p>(사기)</p> <p>제246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2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한 자도 전항과 같다.</p> <p>(…)</p>

39) 김연수,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4호 통권 26호, 2010. 11, 15면.

40) <http://law.e-gov.go.jp/htmldata/M40/M40HO045.html>(2015. 11. 2. 방문)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2012】

- 1 대규모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012. 7)
- 2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2012. 8)
- 3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 4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2012. 9)
- 5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2. 10)
- 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2012. 10)
- 7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2012. 11)

【2013】

- 8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2013. 1)
- 9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2013. 4)
- 10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2013. 5)
- 1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2013. 6)
-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s 배액배상 (2013. 6)
- 13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8)
- 14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2013. 9)
- 15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2013. 10)
-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전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3. 11)
- 17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12)

【2014】

- 18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2)
- 1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 20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2014. 3)
- 21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4)
- 22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4)
- 23 카페리어객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개선과제 (2014. 5)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 24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014. 5)
- 25 해양경찰조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7)
- 2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8)
- 27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2014. 8)
- 28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9)
- 29 인터넷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연방법제 (2014. 9)
- 3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 (2014. 11)
- 3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12)
- 32 영상정보처리기술에 의한 공공장소 감시 관련 독일 입법례 (2014. 12)
- 33 그라피티(Graffiti)와 사물(실존체) 손상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4. 12)

【2015】

- 34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
- 35 일본 국선번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5. 2)
- 36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2)
- 37 감염병 대유행(에볼라)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관련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3)
- 38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관련 입법례 (2015. 3)
- 39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4)
- 40 모성보호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5)
- 41 ‘혐오표현(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5. 5)
- 42 공직 후보자의 사전 검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6)
- 43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2015. 8)
- 44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표시제도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9)
- 45 경영권 방어 중 차등의결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9)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46호


발 행 인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김광진 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
발 행 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관리과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5년 11월 18일
인 쇄 동서문화사 (02-2266-8179)
발간등록번호 : 31-9720108-001322-14

<비매품>

국회도서관 2015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나비처럼 자유로운 세상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08-001322-14



대한민국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법률도서관 <http://law.nanet.go.kr>